

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

인증대상

협력적 노사관계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조직

※ 단, 최근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 수 등 명단 공표 사업장,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(벌금이상) 및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제외



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제도란?

노사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및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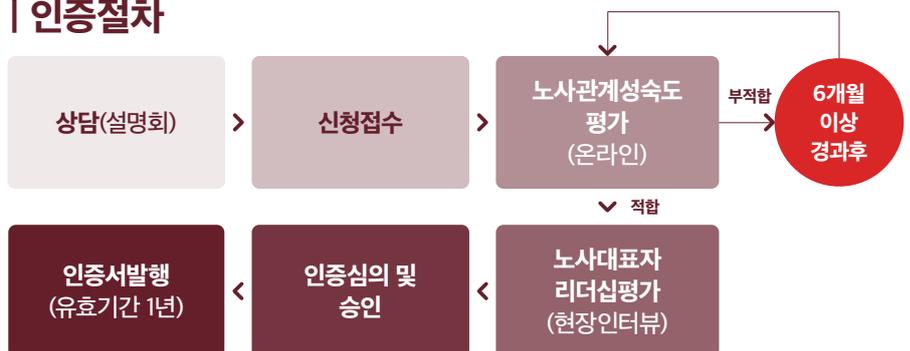
| 도입배경

- 01 한국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사갈등으로 인해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국가차원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**상생적 노사관계 형성**의 필요성 증대
- 02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조직성과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**미래지향적 노사문화 형성** 필요
- 03 경기악화와 실업률 증가 등 경영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**협력적 노사관계 구축** 필요성 대두

| 기대효과

 <p>상호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 형성을 통한 소모적 갈등 비용 해소</p>	 <p>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통한 직원들의 근로 사기 진작 및 조직 생산성 향상</p>	 <p>상생의 노사관계 문화 조성에 선도적 참여로 조직의 사회적 가치 및 명성 제고</p>
--	--	--

| 인증절차



I 인증유효기간

인증 승인일로부터 1년

I 인증기준

총점 70점 이상, 노사관계 성숙도 배점의 60% 이상 득점

I 평가항목 및 배점

구분	평가항목	배점
노사대표자 리더십	· 최고경영자 · 근로자(노동조합) 대표	10점 (각5점)
노사관계 성숙도	· 협력(노사 파트너십 등) · 신뢰(노사 간 합의사항준수 등) · 소통(노사 간 정보공유 등) · 참여(노사관계 활동 참여 등)	70점
노사대표자 성과	무분규 기간 전반적 노사관계 만족도	20점 (각10점)

※ **감점(10점)** 최근 3년 이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 받은 사업장

단위: 만원(부가세 별도)

I 인증비용

임직원수	신청비	성숙도 평가비	현장 심사비	인증 등록비	인증비용 합계
300인 이하	50	200	100	50	400
301 ~ 1,000인	50	300	100	50	500
1,001 ~ 3,000인	50	400	100	50	600
3,001인 이상	50	500	100	50	700

*여비 및 기타경비기준: 심사원(2인 1조)의 이동에 따른 출장비용은 심사대상 조직의 위치에 따라 지역별의 기준으로 청구되며, 모든 숙박비와 식대는 조직이 실비로 부담합니다.

(인당 교통비: 서울 4만원/회, 경기 8만원/회, 충청·강원(영서) 12만원/회, 영호남·강원(영동) 16만원/회, 제주 25만원/회)

I 인센티브

1. 온라인 기획기사 홍보
2. 노사관계 트렌드 보고서 제공
3. 노사관계 성숙도 결과보고서 제공
4. 노사 관련 공개교육 1인 무료초청
5.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(GSMA) 노사상생부문 시상후보 추천



I 인증제공품

인증결과보고서



인증서 (공통)



인증현판
(최초인증)



인증패
(갱신인증)

